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(제2025-14호)

◇ 개정 이유

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(문화시설의 관리위탁)제2항에 따라 '25년 사업에 대해 수탁기간을 개정 반영하여,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함

◇ 주요내용

- 제4조 수탁기간을 기존 '2024년 1월 1일 ~ 2024년 12월 31일(1년)'에서 '2025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(1년)'으로 변경